

의안번호	2213449
의 퇴 인	최보운의원
회 답 일	2025.10.28.
추계번호	25D5453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000만원, 2031년 2,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8,000만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제1항)	40	-	-	40	-	80	-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 (안 제10조제6항)	20	20	20	20	20	100	-
합계	60	20	20	60	20	180	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디지털자산 기본계획등의수립)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의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디지털자산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2. 디지털자산 정책의 부분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 연구개발 지원 등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자산 산업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7. 그 밖에 디지털자산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자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4	안 제11조(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디지털자산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둠(제1항)	의무규정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제2항)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자산 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에 부여된 사항	의무규정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제5항)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디지털자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디지털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디지털자산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의무규정
5	안 제120조(설립)	디지털자산산업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안 제122조(회원 가입 등)	협회는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고(제2항), 제1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수취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안 부칙 제3조(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 설립에 대한 준비)	금융위원회는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디지털자산 기본 계획 등의 수립)	○ (기본계획)	
2		— (시행계획)	미대상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는 하부계획 이므로, 별도의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 (실적평가)	
4	안 제11조(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미대상)	미대상 —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現 가상자산위원회 회를 대체하는 조직인데, 現 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 정수(15명)와 민간위원(9명)이 제정안에 따른 요건 (위원정수 15명, 민간위원 8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 으므로, 재정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120조(설립)	— (미대상)	미대상 — 제정안은 한국디지털자산협회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회의 설립·운영 비용은 회비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의 역시 거래소 출연금으로 운영 중임
	안 제122조(회원 가입 등)		
	안 부칙 제3조(한국디지털 자산업협회 설립에 대한 준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안 제10조제1항)과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안 제10조제6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과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 비용은 유사사업인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분석”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2] 중앙부처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현황

구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데이터 경제 기반 정책 연구
목적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 수립에 필요한 선행연구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결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언
발주기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구기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기간	‘22.10.~’23.3.	‘22.2.~’22.11.	‘18.10.~’18.12.
연구용역비 (예산 기준)	40,000,000원	47,000,000원	30,000,000원

자료: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https://www.prism.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금융 관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분석 비용: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영실적 평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20	20	20	20	20
경영실적 분석 (금융 공공기관)	20	20	20	20	20

자료: 금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다만, 디지털자산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10조제4항),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11조)와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의 설립(안 제120조 등) 비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자산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는 하부계획이므로, 별도의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¹⁾에서 가상자산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15명이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위원은 9명임
 - － 現 가상자산위원회가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위원회의 구성 요건(위원정수: 15명, 민간위원: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설립: 회원사의 자율규제기관으로, 회원인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회비²⁾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설립 비용은 그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원사로부터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안 제10조제1항)

-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함. 용역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함
 -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용역비: 40백만원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3년 주기로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4]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기초연구)	40	-	-	40	-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안 제10조제6항)

- 제정안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 비용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 경영 실적 분석·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
 -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분석 또는 평가 비용: 20백만원

2) 제122조(회원 가입 등)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평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5]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실태조사	20	20	20	20	20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000만원, 2031년 2,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8,000만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제1항)	40	—	—	40	—	80	—
전년도 추진실적 분석·평가 (안 제10조제6항)	20	20	20	20	20	100	—
합계	60	20	20	60	20	180	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 금융위원회의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